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54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23.

발의자 : 김정훈 · 金成泰 · 송희경

김규환 · 김성태 · 노웅래

나경원 · 이명수 · 정병국

유재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의 무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약 720만 명에 이르는 해외 한인경제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.

그 일환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05년부터 한인경제인 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 등 해외 한인경제인과의 교류·협력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동 교류·협력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안정적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·관리 및 활용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성과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).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0호 중 “제9호까지의”를 “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”로 한다.

9의2.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·관리 및 활용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사업)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1. ~ 9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0조(사업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<u>9의2.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·관리 및 활용 지원</u>
10. 시설의 운영, 전문인력의 교육·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<u>제9호까지의</u> 사업에 딸린 사업	10. ----- ----- --- <u>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</u> -----
11. (생 략) ② (생 략)	11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